

대전 하늘채 스카이엔 II

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



- ※ 상기 내용은 청약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,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자료는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,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- ※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(검증)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오류에 의한 당첨 취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청약일정 및 당첨자 발표

구분	신청접수일	신청방법	당첨자 발표	자격검증 서류제출
일자	2021.12.27(월) (09:00~17:30)	•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(스마트폰앱 포함)을 원칙으로 함 • 한국부동산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 ※ 청약홈에서 청약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	2022.01.05(수) 한국부동산원 청약홈	2022.01.06(목)~01.16(일) (11일간) (10:00~17:00)

- ※ 인터넷 청약접수는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, ② 금융인증서, ③ 네이바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개정된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의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. 단,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(10:00~14:00)에서 접수 가능(은행창구 접수 불가)하며 방문 시 서류 부족 및 서류 접수 중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접수 불가합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 : 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세대수의 20% 범위) : 148세대

타입	84A	84B	84C	합계
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	62	43	43	148

신청대상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내 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혼인기간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※ 혼인신고일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→ 2018.12.11.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
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우선공급(50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인 자 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 ② 일반공급(20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인 자 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 ③ 추첨공급(30%) : 소득기준 초과, 자산기준 충족 / 자녀수 미만명 ※ 우선공급,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미 선정 시 추첨공급(30%)에 포함
경쟁 시 우선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(임신, 입양 포함) ②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※ 재혼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, 출산, 입양 자녀의 경우만 해당 ② 2순위 : 무자녀 / 2018.12.11.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자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·입양한 미성년자녀(전혼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함 ※ 재혼 배우자의 전처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※ 임신과 입양의 경우, '임신진단서' 등과 같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됨 ※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

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

기준		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393,647원	7,778,023원	8,162,399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~ 120% 이하	6,030,161원~7,236,192원	7,094,206원~8,513,046원	7,094,206원~8,513,046원	7,393,648원~8,872,376원	7,778,024원~9,333,628원	8,162,400원~9,794,879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초과 ~ 140% 이하	6,030,161원~8,442,224원	7,094,206원~9,931,887원	7,094,206원~9,931,887원	7,393,648원~10,351,106원	7,778,024원~10,889,232원	8,162,400원~11,427,359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초과 ~ 160% 이하	7,236,193원~9,648,256원	8,513,047원~11,350,728원	8,513,047원~11,350,728원	8,872,377원~11,829,835원	9,333,629원~12,444,837원	9,794,880원~13,059,838원
소득기준 초과,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40% 초과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8,442,225원~	9,931,888원~	9,931,888원~	10,351,107원~	10,889,233원~	11,427,360원~	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 초과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9,648,257원~	11,350,729원~	11,350,729원~	11,829,836원~	12,444,838원~	13,059,839원~	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 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 초과~160% 이하)]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추첨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(1인당 평균소득(384,376) * (N-8), 100% 기준)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구분	제출서류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(근로소득자용) ※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▶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("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"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이라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당직장 *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•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※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되지 않을 경우 →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(개인정보 삭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당직장 * 국민연금공단
	전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	*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상기 서류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	*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	* 세무서
	법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(신고자용) 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세무서 * 등기소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민연금공단 *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민연금공단 * 세무서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• 위촉증명서(직인날인)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당직장 * 세무서 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(주택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) 	* 주민센터	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상기 서류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②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당직장 * 국민연금공단 	
무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사업자 확인각서(2020.01.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	* 견본주택	

※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(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/ 원본 및 직인날인 필수

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0		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등	본인	• 견본주택에 비치
	0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*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
	0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)	본인	•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	0			배우자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0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)	본인	•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배림)
	0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0		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"상세"로 발급
	0	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	본인	•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(장애인, 국가공공자 제외) •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(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)
신혼부부 특별공급	0		병적증명서	본인	•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	0		병적증명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	0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혼인신고일 확인
	0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0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, FAX수신 문서 기능)
	0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배우자	•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제출(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,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)
	0	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재혼 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(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)
	0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 제출
부적격 통보를 받은 주택에 대한 소명	0	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 (의료기관 등록번호, 연락처, 담당의사명, 출산예정일 기재 및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)
	0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0	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• 입양의 경우
	0		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	해당주택	• 견본주택에 비치 • 입주의 경우
	0		무허가건축확인서	해당주택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"상세"로 발급
	0		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	해당주택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
	0		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서류	해당주택	• (발급처 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www.iros.go.kr)) 등기열람/발급 } 부동산
	0	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"부동산 소유 현황" (소유 현황에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• 발급 시 (주민등록번호 공개 예외)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0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0		위임장	청약자	•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본(기속대장등본 포함)
	0		신분증	대리인	•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임을 입증하는 서류

- ※ 상기 제출서류(신청자 구비서류)는 최초모집공고일(2021년 12월 17일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※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판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판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- ※ 상기 제출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직접 기재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,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합니다.